

학회 회칙

제 정 1956. 5. 27
개 정 1963. 10. 10
1970. 10. 23
1982. 10. 20
1993. 4. 23
1998. 4. 25
1999. 11. 20
2002. 10. 31
2005. 11. 18
2007. 11. 22
2009. 12. 8
2012. 05. 13
2014. 03. 11
2015. 03. 10
2016. 12. 20
2017. 12. 14
2019. 2. 12
2020. 2. 11
2021. 12. 14
2022. 11. 08
2023. 12. 12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 칭)

대한비뇨의학회(이하 학회)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앙회로 하는 대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, 영문표기는 "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"이라 한다.

제 2 조 (사무소)

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3 조 (목적)

학회는 비뇨의학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을 조사연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의 1 (사업)

학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술대회, 집담회, Workshop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
2. 학술지, 학술도서 및 학회소식지 KUA 웹진의 간행
3.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사업계획, 지원관리
4. 산하단체의 학술활동 지원 및 통합관리
5. 관련 학.협회간의 연락 및 제휴
6. 비뇨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 연수
7.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
8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대한 사항
9. 기타 상임위원회 및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

제 4조의 2 (재단설립)

학회는 회계 및 학회 자산 관리 등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비뇨의학재단 (이하 재단이라 함)을 설립하고, 재단에 제 4 조의 사업 일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구성 및 자격)

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전공의회원, 명예회원, 원로회원, 특별회원,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.

1. 정회원: 대한민국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입회한 자
2. 전공의회원 : 국내에서 비뇨의학과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자.
3. 명예회원 :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평의원회에서 결의를 얻어 입회한 자
4. 원로회원: 학회 정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
5. 특별회원: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내국인 의사 및 전문가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의를 얻어 입회한 자
6. 국제회원: 외국 국적자로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및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해외전문가로서 국제교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며 상임이사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자

제 6 조 (입회)

- ①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단 명예회원 및 국제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만 학회에 신청하고 입회금 및 회비는 면제한다.
- ② 명예회원, 특별회원 및 국제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전항의 등록과 동시에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회의 회원이 된다.

제 7 조 (의무)

- ① 회원은 회칙, 제 규정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단 명예회원, 원로회원 및 국제회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을 면제한다.
- ②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소속 지회를 경유, 학회에 5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권리)

- ① 정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으며

학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, 제 증명 발급, 학회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전공의 회원, 명예회원, 원로회원, 특별회원, 국제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.

제 9 조 (포상 및 징계)

① 포상

1.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, 학회발전,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.
2. 포상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권리 제한과 징계

1.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 1항의 회원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2. 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법제윤리위원회의 평가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.
3.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 입회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 (임원)

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: 1명
2. 차기회장: 1명
3. 부회장: 3명 내외
4. 상임이사: 15명 내외
5. 부총무: 3명 내외
6. 감사: 2명

제 11 조 (임원선출)

- 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.
- ②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"회장 선출 규정"에 의한다.
- ③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 단, 부회장 중 1인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장으로 하고 학술지 (ICUrology)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에 준한다.
-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⑤ 전 1, 2항의 임원은 중앙회에 보고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.
- ③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고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- ④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장으로 부회장에 임명된 자는 그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.

제 13 조 (회장 권한 승계 및 임원보선)

- ①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 동안 차기회장이 회장 업무를 승계한다. 단, 유고된 회장의 임기는 가장 빨리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하고, 그 이후 차기회장의 회장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회장, 제29조1항의 상임이사 순으로 회장 업무를 승계하되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회장업무를 승계한다.
- ③ 회장 또는 차기회장 또는 감사 2인 전원의 유고가 생긴 때에는 90일 이내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위 ①항의 경우는 보선을 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임무)

-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회칙과 규정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재단법인 대한비뇨의학재단 이사장을 겸한다. 또한 총회, 평의원회, 상임이사회 및 재단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산하단체를 지도 감독한다.
-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인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.
- ⑤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- ⑥ 임원은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무의 인계인수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 15 조 (명예회장)

- ① 학회는 학술 공적이 현저하고 학회에 공로가 있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.
-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회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자문위원)

- ① 학회는 자문위원을 두며 그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.
- ②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.
-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7 조 (회의)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평의원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하며, 총회와 평의원회를 제외한 각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단, 기타 본 회 사업 수행 상 의결의 지연으로 학회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긴급하게 평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평의원회도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의결)

- 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을 통보한 구성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. 단, 상임이사회,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총회, 평의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서면 또는 학회의 공식 웹사이트로 공지한다.

제 19 조 (서면 결의)

- ① 회장은 평의원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, 평의원 또는 제9조 2항의 1의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 또는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, 각각 평의원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가와 참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단 아래 의결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.
 1. 회칙과 규정에 관계되는 사항
 2. 학회 재정과 관련된 사항
 3. 임원 선출 및 징계에 관련된 사항

제 20 조 (총회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1/5 이 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소집은 정기총회는 10일전 임시총회는 5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,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총회의 임무)
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및 심의한다.

1.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2.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
3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일반 회무 또는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

제 22 조 (의안)

- ① 정회원은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30일전까지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총회의 의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상정한다.

제 5 장 대 회

제 23 조 (학술대회 구성 및 소집)

- ①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 1회로 한다. 다만, 통합학술대회 시행시는 세부전공학회의 학술 적

-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,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② 학술대회의 추진 및 진행 등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은 상임이사회가 담당한다.

제 6 장 평 의 원 회

제 24 조 (평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)

- ①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된다.
1. 당연직평의원은 회장, 차기회장, 직전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지회장, 세부전공학회장, 연구회장, 부총무 및 대한비뇨의학재단 사무국장, 사무차장, 사업단장으로 한다.
 2. 선출직 평의원은 “평의원선출 규정”에 의해 선출한다.
- ②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한다.
- ③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 정기 평의원회는 연 2회로하며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25 조 (평의원의 임기)

- ①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. 단, 선출직 평의원이 당연직 평의 원을 겸임하게 될 경우, 당해 선출직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한다.
- ②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③ 회장은 매년 1/3의 선출직 평의원이 교체될 수 있도록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 만료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한다.

제 26 조 (평의원회의 의결사항)

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상임이사는 평의원회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회원의 선정, 차기회장 선출,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의 추대,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2.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5.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지회 설치 및 감독
8.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
9. 결원 임원 보선
10.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11.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
12.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 승인에 관한 사항
13.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14. 기타 학회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

제 7 장 상 임 이 사 회

제 27 조 (상임이사회 구성 및 소집)

- ① 학회 회무의 주요 회무의 의결과 집행 감독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
-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부총무로 구성한다. 단, 회장은 필요에 따라 단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회에 상시 또는 수시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-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전자회의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28 조 (상임이사회 임무)

- ① 상임이사회는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두며,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 의결 한다.
 1.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 2.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 3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 4.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6.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 7.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8.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9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10. 회칙, 직제 및 제규정의 제/개정에 관한 사항
 11.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12. 긴급을 요하는 사항
 13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
- ② 회장과 상임위원회의 제반 의사 결정 및 이에 관련된 지시와 통보, 사업 및 회계 집행 은 반드시 일반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전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.

제 8 장 위 원 회

제 29 조 (위원회)

- ① 학회는 사업집행을 담당할 집행기구로서 상임이사회 산하에 각 상임이사에 해당하는 명칭의 상임위원회를 둔다.
-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겸임한다. 단,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되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 차기회장이 겸임한다.
- ③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제10조4항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신설, 폐지 또는 명칭 변경을 할 수 있으며, 별도의 단, 특별위원회, 소위원회, 팀을 둘 수 있다.
- ④ 위 3항의 단, 특별위원회, 소위원회, 팀의 활동 기간, 구성, 소관 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제 9 장 지 회 및 산 하 단 체

제 30조의 1 (지회)

- ① 학회 산하에 지회를 둔다. 지회의 결성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평의원회 인준을 받은 대한비뇨의학회 지회는 서울지회, 인천/경기지회, 강원지회, 대전/세종/충청지회, 대구/경북지회, 부산/경남지회, 호남지회, 제주지회, 한남지회이며, "대한비뇨의학회 OO 지회"라 칭한다.
- ② 지회의 기구와 그 임무는 따로 정한다.

제 30조의 2 (산하단체)

- ① 학회는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산하에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고, 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
- ②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0 장 재 무

제 31 조 (자산)

- ① 학회의 재산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과 동산 (입회금, 연회비, 부담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)으로 한다.
- ② 학회의 재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.
- ③ 학회는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.
- ④ 학회의 자산 중 기금 외의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 가 보관한다.

제 32 조 (예산 및 결산)

- ① 각 연도의 세입, 세출예산 사업계획은 직전년도 평의원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직전년도 총회에 보고한다. 회장은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평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- ② 각 연도의 세출결산은 다음연도 평의원회의 승인으로 완결되며 다음연도 총회에 보고한다.
- ③ 예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33 조 (회계연도)

-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11 장 보 칙

제 34 조 (제정, 개정 및 폐기)

- ① 학회의 제 규정사항은 회칙과 이 회칙의 위임에 따른 규정 및 규칙, 규정 및 규칙의 위임에 따른 세칙 및 내규를 두며, 회장은 제 규정사항의 범위 내에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② 회칙과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발의로 평의원회에서 제정, 개정 및 폐기되며, 규칙, 세칙 및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정, 개정 및 폐기된다.

제 35 조 (준용)

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2012년도 기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을 1월1일로 하여 추가경정 편성하고 당해 연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되, 기 집행된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.